

1. 개정이유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706호, '21.1.21. 공포, '25.7.22 시행)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신청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자 함임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식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각 부처와 합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3. 31) 예정.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비대상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,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)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.

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신청기관	기관명 또는 단체명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대표자	전화번호
	소재지	
주요 업무분야		
설립 근거		
설립 목적		
설립 연월일		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6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		
처리절차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 중소벤처기업부	→ 검토 중소벤처기업부	→ 결정 중소벤처기업부	→ 통지 지정, 신청인 회신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3(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)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.</u>
<u>제6조의3</u> (생 략)	<u>제6조의4</u> (현행 제6조의3과 같음)